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60 발의연월일: 2024. 10. 23.

발 의 자:이철규·김기현·주호영

김선교 • 강승규 • 박상웅

박덕흠 • 김장겸 • 정희용

서일준 • 이상휘 • 박충권

유상범 • 나경원 • 김민전

주진우 · 서천호 · 조배숙

박수민 • 서지영 • 신동욱

인요한 • 우재준 • 곽규택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, 인력양성, 세제·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·실증,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(안 별표 제97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485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에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7. 「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부담금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